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2.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월 24일

나. 발 의 자: 이용주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2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2. 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
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조, 제21조)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장(제21조)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음. 위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제234회 2021년 제2차 정례회에서 영등포구의회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12조제1항 등은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것에서 “필요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제정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	-----

발의년월일: 2022년 1월 일

발의자: 이용주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 관련 규정 삭제(안 제1조, 제21조)
- 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2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 20. ~ 1. 25.)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를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소요될”을 “필요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치를 수반하는”을 “조치가 필요한”으로, “수반될”을 “필요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장(제21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사항을 정하여</u>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필요할</u> ----- ----- ----- ----- ----- -----.

5.·6. (생 략)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

5.·6.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 조치가 필요한 -----

----- 필요할 -----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삭 제>

<삭 제>

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